

##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

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4월 26일

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



### 1. 조 례 명 :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제정이유

우리 구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명확화 (안 제7조 제1항)

-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
- 재위탁시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가능
- 계약기간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음.

#### 나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자구수정

- ▶ 조례(안) 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11조, 제15조, 제16조

##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“전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, 계약기간 만료시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6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2호 중 “기타직원”을 “그 밖의 직원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금치산, 한정치산”을 “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업무)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보육 목적 달성 업무</p> <p>제6조(위탁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전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, 수탁취소,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을 별도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약정의 내용과 서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7조(위탁계약기간 등) ① <u>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수탁대상자에는 기존의 수탁자를 포함한다.</p>	<p>제3조(업무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제6조(위탁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탁계약기간 등) ① <u>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, 계약기간 만료시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의 방법에 응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

제11조(종사자 임면) 어린이집을  
직영할 경우 시설장을 포함한  
종사자임면은 구청장이 하고,  
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 
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  
한다.

제15조(징계권자) 징계권자는 다  
음과 같다.

1. (생략)
2. 기타직원 - 임면권자

제16조(징계) 징계의 종류는 견책  
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 
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  
급을 할 수 없다.

1. ~ 3. (생략)
4.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 
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  
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 
자

② 해임이유

1. 금치산, 한정치산, 파산선고  
를 받은 자
2. ~ 5. (생략)
6.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  
량하며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  
지 않은 자

제11조(종사자 임면) -----  
-----  
----- 제6조제1  
항에 따라 -----  
-----.

제15조(징계권자) 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그 밖의 직원 -----

제16조(징계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 
견인-----
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그 밖에 -----  
-----  
-----